

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2. 5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미숙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공중보건 의사 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보건소가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,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업무대행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업무대행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업무대행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관련법령

○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 의사 수 확보와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,
- 또한,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제4항 및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실행하고, 계약을 해지, 대행 경비를 지급하는 것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판단됨.
-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포항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성실히 지도·감독하고,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